

결 정 서

□ 신청인 ○○○

□ 처분청 ▼▼▼

주 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남양주세무서장이 2019.03.18. ○○○ 대표이사 ○○○(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다)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원을 경정·결정하여 처분청은 2019.04.15.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2019.05.0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원 [가산세 □,□□□,□□□원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사전안내 절차 없이 고지하였고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나. 법인세의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3. 쟁점 및 인정사실

가. 쟁 점

(1) 처분청의 사전신고 안내 없이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인세의 가산세액이 포함된 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세 가산세(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남양주세무서장은 2019.03.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합계 □□□,□□□,□□□원을 납부기한 2019.03.31.로 하여 부과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경정·결정 자료를 2019.04.15. 통보받아, 2019.05.0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합계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19.05.14. 통지받아, 2013

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원을 2019.05.29. 납부한 후, 이 사건 처분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인세의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9.07.30.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4.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부터 각각 1개월)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 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세무서장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다)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2) 구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2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판 단

가.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전신고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가산세액이 포함된 납부 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구「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액이 결정 결정되는 경우 그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구「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

남 양 주 시 장